복지서비스는 365일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 책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소득·생활 지원

1 기초연금제도 06
2 긴급복지지원제도 07
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09
4 노후준비지원서비스 10
5 은퇴금융 아카데미 11

주거지원

6 주택연금제도 12
7 행복주택 공급 13

건강·의료

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6
9 노인실명예방 18
10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9
11 노인틀니 지원 20
1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21
13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2
14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23
15 치매검진 지원 24
1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25

고용 일자리

1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26
18 노인사회활동 지원 27
19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28
20 사회공헌 활동 지원 29
2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30
22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31

돌봄

23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2
2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3
25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34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5
2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36

사회참여

28 고령층 정보화교육 37
29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38
3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39



01 기초연금제도

소득·생활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2. 지원내용

매월 최대 206,050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17.4월 기준금액)

- 단독가구 월 최대 206,05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329,680원

※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셨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02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생활지원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 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생활지원

0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고 75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

※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지원(신청)절차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memo

04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소득·생활지원

1.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지원내용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전국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홈페이지(http://csa.nps.or.kr)

memo

05 은퇴금융 아카데미

소득·생활지원

1. 지원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

2. 지원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강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수강 지역, 일정 선택하여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memo

주거지원

06 주택연금제도

1. 지원대상

주택을 소유(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하고 있으나 다른 소득 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보증하여 드립니다.

※ 집값이 3억원인 경우 60세 가입자는 매월 629,76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4,530원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17.2월 가입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인출하여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채무인수하여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 이사 후에도 새로운 주택을 담보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산절차를 통하여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거지원

07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 예정) 포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년 80% 390만원, 100% 488만원

※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 산업단지형은 산단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 고령자 10%
- 지자체 자체 시행사업,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 등은 별도 비율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구 분	지원주택규모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	최대 거주기간
고령자	전용 16㎡ 이상	76%	20년

3. 지원(신청)절차

입주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4. 문의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임대주택 포털(www.myhome.go.kr)
-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memo

자주 하는 질문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언제 청약을 하고 어디서 청약할 수 있나요?

- 인터넷 사이트 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심지역을 등록하시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H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또한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건강·의료

0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 본인 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합니다.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 가능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043-719-7409, 7433)

자주 하는 질문

어느 병의원·약국에서 가능한가요?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방문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병의원을 처음 방문하실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memo

건강·의료

09 노인실명예방

1.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8만 428원) 이하인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우선)

2.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백내장, 망막질환 등 기타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예상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건강·의료

10 노인치과임플란트 지원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 **부분 무치악이란?**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지원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해당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평생 2개)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

11 노인틀니 지원

1. 지원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2. 지원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클라스프(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적용하여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3. 지원(신청)절차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건강·의료

1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독거노인 중 치매환자 또는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2. 지원내용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 내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리고 119에 신고하여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건강·의료

13 만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지원내용

거주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폐렴구균 무료 접종, 보건소 및 17,000여개 참여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및 17,000여 지정 의료기관(인플루엔자에 한함)에 방문 신청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자주 하는 질문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간에는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

14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1차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원발성 폐암 : 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다른 기관에서 생겨 폐로 옮겨진 경우 전이성 폐암이라고 함)

2.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비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220만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대상자 : 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폐암환자 : 최대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15 치매검진 지원

건강·의료

1. 지원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감별검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3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2. 지원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국 600여개소 협약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진단·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8만원)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종합병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 지원

3. 지원(신청)절차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16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건강·의료

1. 지원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45 ~60세) 치매환자도 기준 충족 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지원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memo

17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고용·일자리

1. 지원대상

정년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지원내용

업종별로 지정된 비율을 초과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 신청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60세 이상 고령자 다수 고용(사업주) → 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확인, 지원금지급(고용센터)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18 노인사회활동 지원

고용·일자리

1.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재능나눔활동 : 만 65세 이상
- 취업창업활동 : 만 60세 이상(소득기준 없음)

2. 지원내용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 공익활동 : 월 22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월 30시간 이상)
  ※ 노노케어, 취약계층 돌봄, 경륜전수활동 등
- 재능나눔활동 : 월 10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창업활동 : 노인일자리 취업창업사업단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생산품(반찬, 셔틀콕 등)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등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수당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활동수당은 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고용·일자리

19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 지원대상
가족·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지원내용
봉사, 취미활동, 운동, 일거리 등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memo

고용·일자리

20 사회공헌 활동 지원

1.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퇴직전문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2. 지원내용
사회공헌활동 일 4시간 이상 참여시 활동비(참여수당, 교통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자체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고용부)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매칭(지자체 운영기관) → 사회공헌활동 실시(참여자-기관) → 활동비 지원(지자체 운영기관)

4.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21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사업

고용·일자리

1.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2. 지원내용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창업거점을 지원합니다.

- (기술창업스쿨) 창업자로서 함양해야 할 창업기본(초기·성장) 교육과 신산업·성장유망분야 중심 기술교육을 100시간 내외로 운영
- (기술창업센터)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시니어 기술창업을 활성화

3. 지원(신청)절차

- 교육 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메뉴 클릭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 신청 승인
- 센터이용 신청절차 : k-startup 회원가입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회원 신청 및 승인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회원카드 발급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이용하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현황에 따라 별도의 모집→평가→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4. 문의처

K-스타트업(☎1367, www.k-startup.go.kr)

22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일자리

1. 지원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지원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3. 지원(신청)절차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처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memo

돌봄

23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하신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2. 지원내용

건강상태, 생활환경 변화 및 욕구를 파악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안전확인 서비스는 주 1회 이상 직접방문 및 2~3회 전화확인
※ 생활교육은 생활관리사별 월 1회, 독거노인별 분기당 1회 이상 실시

3. 지원(신청)절차

시·군·구청 및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 보건복지콜센터(☎129)

memo

돌봄

24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B 판정자로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기준 718만원) 이하인 어르신

※ 단기가사서비스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 또는 조손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 만 18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단독노인 또는 고령의 노인 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2. 지원내용

유형	세부 지원내용
방문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주간보호	보호시설에서 여가활동, 물리치료·언어치료, 급식 및 목욕, 가족 교육 및 상담 등 제공
단기 가사	신변·활동지원(식사 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세탁, 취사 등)
치매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카드 발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대상자 관리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돌봄

25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지원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지원내용

-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상담 및 일시보호,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처

비긴급신고전화(☎110)

memo

돌봄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1등급~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 서비스와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3. 지원(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27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1.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경감적용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당하는 자

※ 4인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예시
- (지역) 59,930원
- (직장) 69,110원(재산과표액 2억 5천만원 이하)

2.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경감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이 지원

※ 단, 소급 적용의 경우 유선신청 가능

4.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www.longtermcare.or.kr)

memo

사회참여

28 고령층 정보화교육

1. 지원대상

55세 이상

2. 지원내용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법 등의 과정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문의 후 신청

4.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정보화 교육
(☎053-230-1392, www.itstudy.or.kr)

memo

사회참여

29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지원대상
일반 노인

2. 지원내용
동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를 돕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껏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절차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memo

사회참여

3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2. 지원내용
문화학교(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제출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내 주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4. 문의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memo

memo

memo

펴낸곳 : 보건복지부 SSiS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강완구
사회보장총괄과장 고형우
사회보장총괄과 고민진, 이서진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본부장 최명경
범부처정보지원부장 황재윤
범부처정보지원부 이창남, 박소현

인 쇄 : 2017년 4월

디자인 : (주)활로컴(02-3141-7522)

ISBN : 978-89-97676-39-2
정부 간행물 : 11-1352000-001921-10

대한민국정부 www.gov.kr

이 책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이 책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는 공공의 목적 이외에는 상업용이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